

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
2.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
3.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
4. 기타수입

제3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.

1. 주차시설의 확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2. 주·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
3. 기타 주차관련사업

제4조(보조 또는 용자)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으며, 그 대상·방법 및 용자금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.

제6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.

부산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"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" (이하 "법" 이라한다)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(이하 "이 회계" 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계년도)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3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,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
2. 국 · 시비 보조금 및 용자금
3.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
4.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
5. 용자금의 상환원리금
6.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
7.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

제4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정비비용
2.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용자
3. 국 · 시비 용자금 및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
4. 기타 차입금 상환
5.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
6. 소속재산의 관리,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, 운영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용자 및 상환) ①이 회계의 용자조건, 방법, 신청, 용자한도액 및 상환-방법등에 관하여는 "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" 또는 "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자금지원 지침"을 준용한다.

②용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제6조(채권보전)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(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)에 대한 1 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국·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 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(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)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상황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.

제8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,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